#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 합리화 방안

2023. 9.

금 융 위 원 회가 계 금 융 과

## │. 추진배경 및 경과

- □ 「대부업법」일부 조문은 대부업체뿐만 아니라, 금융법령에 따라 인·허가를 받아 대부행위를 하는 여신금융기관까지도 규율\*
  - \* 법정 최고금리, 대부채권 양도제한, 중개수수료율 제한 등
  - 이중 **대부채권**\* **양도제한** 규제는 대부채권의 **무분별한 유통 및**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**양도**를 원칙적 금지
    - \* 어음할인 양도담보 및 이에 준하는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 금전의 대부로 포괄적 정의
    - 예외적으로 매입추심업자, 여신금융기관 및 캠코 등 공공기관 에만 양도를 허용(⇒외국 금융회사 미포함(양도 금지))
- □ 산업은행은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**국외 신디케이트론 활성화**를 위해 **'외국차주에 대한 외화채권의 해외양도 제한'을 해소**해 줄 것을 금융위·기재부에 건의('22.上)
- □ 이후 정부는 인프라 대출채권 매각대상으로 국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까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발표\* 및 감독규정 변경예고('23.4월)
  - \* '22.8월 정부 합동 발표 "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"에 포함
  - 규정변경 예고기간中, 외국은행 국내지점(이하 "외은지점")이 보유한 외화 법인대출채권의 해외 본사·자회사 양도 등 <u>영업관행도</u> 규제 합리화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건의를 확인
- □ 이에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에 대한 **다양한 이해관계자** 의견을 **폭넓게 검토**하기 위해 '23.7~9월 <u>3개월간 TF\* 운영</u>
  - \*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(주관), 기재부, 금감원, 은행연합회, 중소기업중앙회, 외은지점 협의회, 금융연구원, 법조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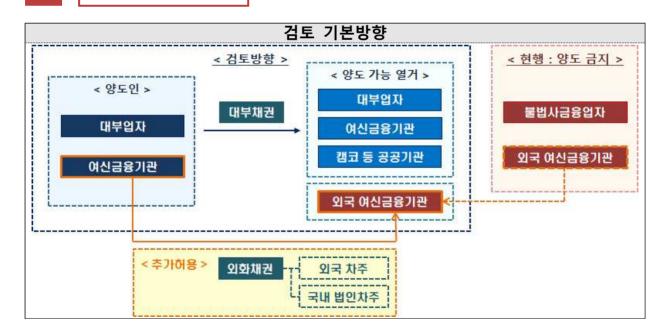
# Ⅱ. 현 대부업법 조문上 채권 양도 규제

- □ 대부채권 양수인에 **외국 금융회사가 미포함**되어, 국내 금융사가 **국외 신디케이트론**\*에 참여해도 **적극적 금융지원 제약** 
  - \* 인프라사업 등 거액을 조달하는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, 최초 금융주선 이후 해당채권을 매각(예시: 산은의 美 JFK공항 재개발 사업 금융주선)
  - 또한, 양도 제한 대상인 채권 유형, 차주 유형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부재하여 모든 대부채권 양도가 제한됨으로써 <u>시장에서</u> 실무적으로 필요한 채권 양도도 일괄적으로 금지될 소지
  - ➡
     외국금융회사 등에 대한 대부채권 양도 관행 등을 점검하고

     법령 취지를 보존하는 범위에서 규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

## Ⅲ. 개선방안

# 1 기본방향



- □ <u>불법사금융업자로의 채권 양도</u>는 해당 조문의 취지를 감안하여 채권 유형·차주 유형과 무관하게 모두 <u>양도 금지</u> 유지
- □ 외국 금융회사로의 채권 양도는 허용하되, <u>규제 완화 수요가 있는</u> 외화 채권에 한해 허용

- 1 <u>비거주자\*인 외국 차주</u>에 대한 대출채권 해외양도는 대부업법 취지\*\* 및 법적용 실효성 등을 고려시 규율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
  - \*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 "비거주자" 정의" :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
  - \*\* 대부업법 §1조(목적) : ...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,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
  - 시행령(§2조) 개정을 통해 여신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대부하는 경우\*를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
    - \* ①역외에서 외국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인프라사업 신디케이션 대출채권 ②한국 금융회사 국외 지점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 해외 양도 등
- ②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경우는 세부 구분(개인/법인차주 및 양도사유)하여 검토(c= 2)

# **2** 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 해외 양도 허용범위

◇ 기존 거래관행을 폭넓게 인정하되 대부업법 동 조문의 취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<sup>①</sup>규제완화 필요성이 크거나 <sup>②</sup>이미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거래 중 <sup>③</sup>채무자 권익침해 우려가 적은 경우로 제한

## 가. 국내 개인 차주 : 양도 금지 유지

□ **국내 개인 차주에 대한 외화채권**은 개인정보 국외유출 문제, 비대면 채권추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으로의 채권양도를 제한

### 나. 국내 법인 차주 : 특정 양도 사유에 한해 허용

- □ **국내 법인 차주에 대한 외화채권**의 경우 **전면 허용**으로 전환할 경우의 **부작용**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
  -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<u>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거래</u> 중 해외 양도 <u>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경우</u>에 한정하여 <u>제한적으로 허용</u>하고 이를 모니터링

#### 국내 법인 차주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의 해외 양도 허용사유

- **1.** 여신금융기관이 **복수의 대주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**으로 취급한 **대출채권**을 양도하는 경우
- 2.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상품(수출 팩토링/포페이팅\*, 수출환어음 매입, 수입 신용장 개설 등) 취급에 따른 대출채권을 그 본점, 지점 또는 계열회사인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
  - \*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수출자로부터 소구방식으로 매입한 경우에 한정 (판례에 따르면 비소구방식으로 매입한 채권은 대부업법상 대출채권이 아님)
- 3.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해당 지점의 폐쇄·청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대출채권을 그 본점, 지점 또는 계열회사인 외국 여신금융 기관에 양도하는 경우
- ※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대출채권을 양수한 외국 여신금융기관은 ①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의 의무를 준수할 것 ②재양도시 양수인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 한정할 것을 확약(양도하는 여신금융기관이 서면 확약서 징구)
- ※ 추후 위 사유 이외에 해외 양도가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허용사유에 포함하여 재개정 검토

#### 다. 양수자인 외국금융회사 범위 : 외국 여신금융기관

- □ 외화채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외국 금융회사의 범위를 제한
  - 채권추심 또는 신용정보보호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양수인 으로 범위 한정(외국금융회사 → 외국 여신금융기관)
  - 외국 여신금융기관은 "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여신금융기관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"
  - ⇒ 외국 은행·보험·증권사·펀드·상호금융·신탁업자·정책금융기관 및 등록SPC\*에게만 양도 허용(대부업자 및 비등록SPC 제외)
    - \* 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인·허가 등을 거쳐 설립·운영하는 SPC

# Ⅳ. 기대효과

#### 1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해외진출 활성화

○ 역외 대부행위는 대부업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잠재적 위법소지를 해소함으로써,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

#### ② 국내 여신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지원

 국내 여신금융기관이 비거주자를 상대로 취급한 대출채권을 해외 금융회사로 양도 가능케 함으로써, 부실우려 채권을 해외로 매각하는 등 여신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에 도움

#### ③ 국내 수출입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

- 국내 여신금융기관·외은지점이 **외화 대출채권 해외 양도를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**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국내 법인 차주에 대한 **신디케이션 또는 무역금융 방식\*의 금융지원** 여력을 확대
  - \* 외은지점의 외화표시 대출채권 해외 매각 실적 중 국내 수출입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대출채권이 대부분을 차지

#### 4 국내 영업 중인 외은지점의 영업행위에 대한 법규상 모호성 해소

- 외은지점 등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본점·지점 등으로의 채권 양도를 가능케 함으로써, 원활한 지점 폐쇄·청산을 지원
- 현행 대부업법 **문리해석**上 금지되고 있는 **외은지점의 영업행위**를 **법령의 틀 안**으로 포섭

# ∨. 향후 계획

- □ 시행령·감독규정 <u>입법예고(9.19일~10.30일(40일))</u> → 금융위 의결 → → 차관·국무회의 상정 및 시행<sup>\*</sup>
  - \* 차관·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 재가 이후 공포 시점에 시행

#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

####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

제2조(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)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- 1.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.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
- 3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. 비영리법인이 정관 목적 범위내에서 대부하는 경우
- 5. 여신금융기관이「외국환거래법」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외국인(개인 및 법인)에게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

**제6조의4(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)**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"대부업자, 여신 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"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
- 1.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2. 여신금융기관
- 3.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4. 한국자산관리공사 5. 한국주택금융공사
- 6.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여신금융기관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(이하 "외국 여신금융기관"이라 한다). 다만,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
- 7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

####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

#### 제12조(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)

- ① 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"란 법인에 대한 외화대출 채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1. 여신금융기관이 복수의 대주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급한 대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
  - 2.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상품(수출 팩토링/포페이팅, 수출환어음 매입, 수입 신용장 개설 등) 취급에 따른 대출채권을 그 본점, 지점 또는 계열회사인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
  - 3.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해당 지점의 폐쇄·청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대출채권을 그 본점, 지점 또는 계열회사인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
-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은 대출채권을 양수한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상 채권 추심자의 의무를 준수하고, 재양도시 양수인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대부계약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서면을 징구하여야 한다.
- ③ 시행령 제6조의4제7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- 1.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
  - 2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제29조의4 제2항 제2호의 회사등(→기간산업안정기금, '20.10월)
  - 3.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(→*州출발기금, '22.9월)*

# 참고

## 관련 법규

- 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- 제2조(정의) 4. "여신금융기관"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.
- 제9조의4(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・추심 금지 등) ①~② (생략)
  -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,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19조(벌칙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5.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
- 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제2조의2(여신금융기관의 범위) 법 제2조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"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.
  - 1. 「은행법」 2. 「중소기업은행법」 3. 「한국산업은행법」 4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 5. 「한국은행법」 6. 「자본시장법률」 7. 「상호저축은행법」 8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9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10. 「신용협동조합법」 11. 「산림조합법」 12. 「새마을금고법」 13. 「보험업법」 14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15.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16. 「우체국예금・보험에 관한 법률」 17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17의2.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」 18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법률 (『위임조문 없음)
- 제6조의4(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)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"대부업자,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"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  - 1.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2. 여신금융기관
  - 3.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
  - 4.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
  - 5.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
  - 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

#### □ 대부업등 감독규정

- 제12조(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) 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- 1. 「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
  - 2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제29조의4 제2항 제2호의 회사등
  - 3.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